

國際特許分類(IPC)의 歷史



黃 允 淸

<特許廳 審査擔當官>

1 머리말

世界各國에서 發行되는 特許文獻은 技術情報, 權利情報로서 높은 利用價値가 있지만 發行國에 따라서 저마다 다른 言語를 쓰고 있을뿐 아니라 分類도 各國의 特有한 것이 쓰여지고 있어 利用者에게 便宜를 提供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특히 分類은 特許文獻의 整理, 檢索의 重要한 Key가 되는 것으로서 오늘날에는 특히 문헌에 世界共通의 分類를 作成함으로써 얻어지는 편익은 特許文獻利用者에게 널리 알려져 있으며 이 世界共通의 分類가 IPC이다.

그러나 現在에 있어서는 當然하게 생각되고 있는 IPC도 그것이 ㅅㅅ이 ㅅㅅ이 誕生하게 되기까지의 歷程은 결코 平坦한 것은 아니었다. 다음과 같이 順次的으로 IPC의 發展過程을 더듬어 본다.

2 유럽評議會가 結成되기까지

工業所有權分野에 있어서 國際協力の 歷史는 各種産業이 顯著하게 發達한 19世紀末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중에도 1883년의 公業소유권의 保護에 관한 파리協約은 國際協力態勢를 決定的으로 갖췄으므로 높이 評價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19世紀初에 美國特許廳, 프랑스特許廳 및 英國特許廳은 특허문헌에 대하여 알파벳順으로 리스트를 작성하기 始作하였다. 이것은 特許分類의 基礎를 이루는 것으로서 歷史的意義가 있는 것이다. 한편 1876년 Melvil Dewey는 國際 10進分類(UDS)를 提案하였다.

이것은 國際的인 分類의 선각을 이루는 것으로서 중요한 것이지만 分類對象이 모든 種類의 것을 망라하고 있기 때문에 특허라고 하는 限定된 對象을 分類하는데 適當하다고는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한다면 IPC(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에서 IP는 파리協約으로 定立되고, PC는 알파벳順 리스트에서 ㅅㅅ이 ㅅㅅ이 IC는 UDC에 의하여 確實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個個의 思考方式이 結合되어 具體的으로 IPC의 3 拍子가 具備되게 되었다.

파리協約發効後에 各加盟國의 特許法에 대한 調和가 討議될때에 各가맹國에서 쓰여지고 있는 分類體系를 조화하는 일과 國際的인 특허분류를 만드는 일도 아울러 토의되었다.

1904년에 知的所有權保護合同國際事務局(BIRPI)이 파리協約加盟國에게 國際的인 특허분류의 제안을 計劃하고 1905年 3月 20日자로 各가맹國에 書翰을 보내어 意見을 물어보았다. 그러나 얻어진 回答은 消極的이었기 때문에 국제적인 특허분류의 제안은 取下되었다. 主要한 理由는 各國에서 전혀 다른 分野의 技術이 急速하게 進歩하고 있기 때문에 各국에 共通된 分類가 된다고 하여도 그것이 充分한 機能을 다할 수 없으리라는 것이었다.

各국에 공통된 分類가 많은 利點이 있다는 것은 一般的으로 널리 認定되었지만 1926년 베른에서 開催된 「技術討論會」(Rèunion technique)에서 프랑스, 체코 슬로바키아 및 스페인이 제안한 국제적인 특허분류도

國際特許分類(IPC)活用가이드(1)

採用되지 아니하였다.

③ 유럽評議會의 結成

1949年 5月 5日 經濟, 社會, 文化등의 분야에 있어서 유럽의 統合을 目的으로 하는 유럽評議會(The Council of Europe) 設立條約에 英國, 프랑스, 白耳義, 伊太利, 和蘭,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및 에이베의 10個國이 署名하고 1949年 8월 3일 에 正式으로 發足했다.

이 유럽평의회는 본부는 北部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에 設置되었다. 유럽평의회에는 그後 西獨, 스위스, 그리스, 터키, 아이슬란드, 오스트리아, 키프러스 및 말타의 8個國이 加入하여 締約國은 18個國에 이르렀다.

1949年 12월의 諮問會議(The Consultative Assembly)에서 프랑스의 上院議員 Long Chambau가 유럽特許廳設立計劃을 제출했다. 회의는 유럽特許廳設立에 贊成하고 閣僚委員會(The Committee of Ministers)에 必要한 措置를 取하도록 勸告했다. 閣僚委員會는 이 권고를 研究한후 다시 詳細히 이 問題를 審議하고 그 結果를 報告하기 위하여 全締約國의 政府에 의한 特許專門家委員會(The Committee of Experts on Patents of the Council of Europe)를 創設할 것을 決定하였다.

특허전문가위원회는 각국의 여러 法律 또는 節次의 조화와는 別途로 共通分類體系의 작성이 특허분야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였다.

1951年 7월의 會合에서 특허전문가위원회는 共通分類體系를 작성하는 作業을 進行하기 위하여 作業部會를 만들기로 결정하였다. 이 작업부회의 첫회합은 1952年 1월 15일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렸다.

주요한 論議는 공통분류체계를 작성함에 있어서 機能에 따라 분류하는 原則을 擇할 것인가 아니면 産業分野와 用途에 따라 분류하는 原則을 취해야 하느냐는 問題였다.

모든 利用者의 要求를 滿足시키기 위하여 上記한 두 가지 원칙을 併用한 複合體系가 適當하다고 하는點에서 合意를 보았다. 즉 機能別分類 및 産業分野別 내지 用途別分類가 함께 可能하도록 공통분류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結論이 얻어졌다.

특허전문가위원회에서 전문가 몇사람은 공통분류체계가 既存分類體系中的 하나를 基本으로 해서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指摘했지만 一般의인 의견으로서는

기존분류체제는 어느 것이나 時代에 뒤떨어진 것이라는 이유로 難色을 보였다.

그것은 기존분류체제는 어느 것이나 産業發展의 初期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最初에는 論理的 觀點에 의한 分類展開가 試圖되어 특허의 대상이 되는 기술의 분류를 우선 21로 大別하고 다시 그것을 115로 나누었다. 이 분류의 細分化가 전망하는 것은 審査國이나 無審査國에게도 有用한 분류체계를 만드는 데 있었다. 이에 關聯하여 檢索이 便利하도록 115個分野를 細分化後 各分類項目에 거의 一定數以下의 특허 문헌이 분류되도록 細分化할 필요가 있음이 지적되었다. 이는 이른바 「스트라스부르·리스트」에 코멘트 要請이 붙은 것으로서 유럽평의회 모든 締約國에 回付되었다.

제출된 코멘트에 의하면 「스트라스부르·리스트」의 趣旨에 贊成하는 나라는 없고 분류전개의 내용에 關해서 많은 重大한 疑問이 있는 것도 제시되었다. 제안된 분류전개에 대하여 스칸디나비아 諸國에 의하여 表明된 의견은 그後 스칸디나비아제국이 프랑스 및 스위스의 支持를 얻어 기존의 獨逸分類體系를 基礎로 하여 사용할 것을 제안하는 根本이 되었다. 이 제안은 獨逸分類體系가 벌써 유럽 즉 오스트리아, 체코슬로바키아, 덴마크, 폴란드, 루우마니아, 스웨덴, 네덜란드 및 蘇聯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었음을 考慮하여 이루어졌다. 폴란드는 1952년에 독일분류체계를 채용하고 第1次世界大戰後에 그것을 다시 발전시키고 있었다. 더우기 이 제안에 있어서는 새분류체제는 할수있는대로 많은 機能別分類클래스를 포함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上記한 제안에 기초를 둔 최초의 草案은 1952年 5월의 작업부회의 회합에서 작성되었다. 이 초안은 103클래스가 포함되고 그것들은 論理的觀點을 충족시킬수 있도록, 그리고 독일분류체계와 같은 順序로 전개하면 일어나기 쉬운 言語上의 문제를 피하도록 個個分野의 그룹으로 나누었다.

103클래스의 그룹으로 나누기 위한 5개분야의 配置는 下記와 같다.

- 1) 生活必須品(Human Existence)
- 2) 處理, 操作(Performing, Operations)
- 3) 原材料, 製品 및 그것들의 製造(Materials and Articles of Commerce and their Production)
- 4) 固定 建造物(Fixed Constructions)
- 5) 物理 및 機械(Physics and Machine)

1952년 6월의 특허전문가위원회와 작업부회의의 합동회의에서 이 초안이 審議되고 必要個所가 補正되었으며 그리고나서 條約國에 코멘트를 구하기 위하여 회부되었다.

이 초안에 채용된 배치가 最新의 分類手法에 의한 것이라는 根據는 표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초안에서 채용된 分類體系, 分類記號 및 配置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同意되었다.

상기와 같은 過程을 밟아서 작업부회는 1953년 1월에 다시 定例會議을 열었다. 이 회합에서 프랑스특허청의 代表와 國際特許協會(IIB)의 읍서아버가 심의에 參加했다. 프랑스특허청대표의 참가는 심사를 하지않는 특허청이 안고 있는 문제를 알기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다. 또한 유럽評議會事務局長이 전문가의 助言없이 프랑스語版作成作業을 할수 없음을 고려하여 프랑스특허청대표의 참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회합하는 동안에 締約國特許廳에 의하여 제출된 제안을 基礎로하여 많은 보정이 加하여졌다. 最終案은 색선이라고 불리워지는 8분야로 된 배치였다. 이들 분야의 세분화가 분류기호 및 8색선, 103클래스 및 594서브클래스로된 것이었다.

條約國특허청에 있어서 이 분류체제를 사용하는데는 다시 可能한 限 깊은 세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인정되었다.

그리고 이 분류체제의 사용을 국제결국에 義務化시키는 條約을 만들고 이 분류체제의 발전을 圖謀할 것이 결정되었다. 이 결정을 받아서 「특허의 國際分類에 관한 유럽協約」(The European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Patents for Invention)이 1954년 12월 9일에 署名되고 1955년 8월 1일에 發効되었다. 條約國은 벨지움, 덴마크, 西獨, 프랑스, 에이레, 이탈리아, 폴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터키 및 英國과 아울러 유럽評議會締約國은 아니지만 파리協約加盟國인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및 스페인이었다. 이 협약은 파리협약의 加盟國間의 特別規定에 留意하여 締結되었다. 다음에 IPC역사를 年表로서 略述한다.

IPC年表

- 1876. Melvil Dewey 國際10進分類提案
- 1883. 파리協約 締結

- 1904. BIRPI 國際的인 特許分類提案을 計劃
- 1905. 3.20. BIRPI 파리協約加盟國에 打診, 消極的의 回答, 接受
- 1926. 技術討論會(베른)에서 프랑스, 체코 슬로바키아 및 스페인의 國際的인 特許分類提案 拒絕
- 1949. 5. 5. 유럽評議會署名
- 1949. 8. 3. " 發足
- 1949. 12 Long Chambau 유럽特許廳設立計劃提出 贊同언다
- 1951. 7. 유럽評議會의 特許專門家委員會가 作業部會 設立決定
- 1952. 1.15. 作業部會 첫會合(스트라스부르)
- 1952. 5. 獨逸分類를 基礎로 IPC草案作成
- 1952. 7. IPC草案補正, 締約國에 回付
- 1953. 1. 作業部會 最終案作成(8색선, 103클래스서, 594서브클래스)
- 1954. 봄 作業部會 第5回會合 IPC細分化 着手(機械擔當部門 化學擔當部門)
- 1954. 12.19. 유럽協約署名
- 1955. 8. 1. " 發効
- 1957. 電氣擔當部門 細分化着手
- 1961. 12. 유럽協約附屬書의 補正版發効
- 1966. IPC全分類體系改正
- 1967. 7. 14. WIPO署名(스톡홀름)
- 1967. 11.6~8. 特許專門家委員會 IPC 第1版에 同意
- 1967. 11. IPC改正作業等の 一般化決定
- 1967. 12. 파리同盟總會에서 IPC의 改正作業等の 一般化要望
- 1968. 9. 1. IPC第1版發行
- 1969. 4.14~16. 合同暫定委員會 첫會合
- 1970. 4.26. WIPO協約의 發効
- 1970. 6.19. PCT調印
- 1971. 3.15~24. 스트라스부르外交會議
- 1975. 6.23~30. IPC同盟準備會議(제네바)
- 1975. 10.7~9. IPC同盟 第1回特別總會(제네바). IPC에 관한 스트라스부르協定發効

<계 속>